

**영세한 독립제작사와 문체부의 허술한 관리·감독?**

<질의요지>

방송영상독립제작사는 방송영상의 핵심이나, 이를 주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구태의연한 자세로 오히려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음. 따라서 우리 방송영상독립제작의 미래를 위하여 현재 신고되어 있는 독립제작사에 대한 일괄적인 점검을 통해 올바르게 정당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방송영상독립제작사는 방송콘텐츠의 중요한 제작 주체이나 실제 그 규모와 인력에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코스닥에 등록된 업체의 최근 4년간 지속적인 경영수지 적자로 적자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임.

○ '10년 9월말 현재 총 1,553개의 독립제작사가 등록되어 있으나, '05년 81개를 정점으로 창업이 감소하는 추세임.

제작자 수	자본금 (백만원)	인력		연간제작능력 (시간)
		총인력	제작인력	
1,553개	718,572.5	24,138	16,564	895,308.3
1개사당 평균	463.6	15.5	10.7	576.9

○ 독립제작사의 평균 자본금 규모는 4억6,360백만원으로, 1억원 미만사가 802개사 51.7%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80.5%인 1,247사가 자본금 3억원 미만으로 매우 영세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음.

5천만 미만	5천만~1억	1억~3억	3억~10억	10억 이상	기타	계
238	564	445	202	101	3	1,553
(15.4%)	(36.3%)	(28.8%)	(13.0%)	(6.5%)	(0.001%)	

○ 또한, 인력 규모별로 보면, 전체 사업자 중 50%인 777개 업체가 10인 미만의 제작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구분	10인 미만	10인~20인 미만	20인~50인 미만	50인 이상	계
총인력	777 (50.0%)	486 (31.3%)	234 (15.1%)	56 (3.6%)	1553
제작인력	1016 (65.4%)	380 (24.5%)	127 (8.2%)	30 (1.9%)	1553

○ 코스닥에 등록된 7개의 독립제작사는 최근 4년간 거의 지속적인 경영수지 적자를 보이고(삼화네트웍스는 제외) 있으며 적자폭이 점차 증가하여 -935억원으로 확대되는 추세임. (단위:억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매출액	당기순이익	매출액	당기순이익	매출액	당기순이익	매출액	당기순이익
김중학프로덕션	170	-5	224	-386	361	-126	182	-224
삼화네트웍스	38	-165	125	-23	281	17	157	13
올리브나인	280	-109	352	-43	402	-84	196	-213
초록뱀미디어	255	-87	250	-186	192	-31	101	-95
팬엔터테인먼트	162	36	96	4	181	-1	159	4
에당	310	-325	262	-221	399	-561	200	3
스타맥스	98	-7	85	6	83	-149	73	-76
계	1,313	-662	1,394	-849	1,899	-935	1,850	-588

\*스타맥스는 2010년 3.23 상장폐지

□ 허술한 독립제작사 신고·관리 실태

○ 이러한 형태가 왜 발생되었는가를 살펴보면, 법에 규정된 신고 사항에 위반되어도 신고접수 받는 등 전반적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신고·관리의 부재로 기인하였음.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정의) 20.“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라 한다)란 방송영상물을 제작하여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국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1조(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①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라 한다)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수출에 대한 실적서
2.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수출에 대한 계획서 또는 그 요약서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독립제작사의 대표자 또는 소제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신고인의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절차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았

을 때에는 그 신고요건을 확인하여 신고증을 발급하고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2조(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제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우수한 방송영상 및 광고프로그램의 기획·제작·개발의 지원
  2. 제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3. 독립제작사 간의 시설·기자재의 공동사용 및 임대 등의 알선
  4. 독립제작사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
  5. 독립제작사가 참여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의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관련 사업의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는 시행령에 명시된 독립제작사 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미비되거나 신고양식에 문제가** 있어도 신고접수를 받고 신고증을 내어주고 있음. 더욱이, 변경신고 역시 법에 의거한 처리기준을 무시하고 진행되는 실정임.

○ 더욱이, 법과 시행령이 모두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신고서류를 받아 신고증을 내어주는 오류를 현재에도 범하는 등 사태는 심각한 실정임.

□ 이렇게 무성의한 관리를 행하는 문화체육부는 신고·관리에 대하여 아무런 해명도 없이 '10년 58개 업체, 59억원의 예산을 지원했고, 이 중 신고양식에 문제가 있는 19개 업체 21개 작품에 19억5,200만원 지원 하는 등 법과 원칙에 어긋난 행동을 취하고 있음.

○ 문체부는 방송영상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10년 총 66억원을 투입하여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을 펼칠 계획을 밝힌 바 있고(공감코리아 2010.2.23), 현재 58개 업체, 59억원 지원됨.

○ 지원분야는 ▲미니시리즈▲단막극▲HD급 대작 다큐멘터리▲중저예산 다큐멘터리 및 교양▲방송콘텐츠 포맷▲3D콘텐츠 등이며 지원한도는 최대 5억원까지임.

○ 지원대상은 문체부에 신고 된 방송영상독립제작사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58개 지원대상자의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서를 살펴본 바로는, 19개

업체 21개 작품에 한해서는 독립제작사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

○ 최근 지상파 방송사에서 방영한 '로드넘버원'을 제작한 '로고스필름'을 비롯하여 총 19개 업체 21개 작품은 법과 원칙에 맞지 않게 19억5,200만원의 예산 지원.

<'10년도 문체부 예산지원 독립제작사 중 신고서류상 문제있는 제작사 목록>  
(단위:백만원)

회사명	작품명	대표자명	지원예산
로고스필름	로드넘버원	이장수	500
눈썹달픽쳐스	닉네임 김광자의 제3활동	정용욱	50
눈썹달픽쳐스	신 조은지 패밀리	정용욱	50
눈썹달픽쳐스	사랑을 가르쳐 드립니다	정용욱	50
(주)윙프로덕션	아디동 블루스를 아십니까	이왕래	48
(주)미디어콘텐츠헤움	청년, 도전스토리북	송미현	48
지오아시아	밀림에서 설산까지 히말라야	강정호	48
유니원미디어	잠자는 동전에 가능성의 날개달기프로젝트	박지광	47
씨엠네트웍스	카미노 데 디아 삶의 길	방정오	43
크레오컨텐츠	식품으로 세계를 구하는 방법	김영노	49
(주)어스커뮤니케이션	한글, 밖에서 되돌아보다	남원희	48
낙미디어	불멸의 전설 제일동포 야구단	이화실	48
프로덕션봉	세균이 지구를 구한다	박성우	31
이미지다큐	세상에서 가장 느린 삶	우경도	48
(주)솔강	<형제의 기억! 캄카르데쉬-터어키>	진 원	45
인디컴시네마	우체부가 보낸 편지	장상일	48
선진종합예술	소울푸드	이윤경	41
허브넷	숨비소리, 두 해녀 이야기	이미애	75
광운미디어콘텐츠센터	3D 절대한국사전 - 신비의 섬, 제주	김기영	75
이큐브 미디어	천년의 꿈, 천년의 빛-한국도자기	정철호	60
제일애드컴	누나의 삼월	신수범	500
<b>19개 사</b>	<b>21개 작품</b>		<b>19억5,200만원</b>

**질의1** 방송영상독립제작사는 방송영상물을 제작하여 플랫폼 사업자에 제공하는 기초적인 제작사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 규모와 인력에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코스닥에 등록된 업체의 경우만 하더라도 매년 경영이 악화되는 등 그 실태를 짐작할 수 있음.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질의2** 이러한 난무한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이유를 보면, 결국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의 부재라 볼 수 있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명시된 독립제작사 신고자 제출필요서류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서식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수출에 대한 실적서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수출에 대한 계획서 또는 그 요약서를 각 1부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09년도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제출서류를 살펴보면 대부분 방송프로그램 제작·수출에 대한 실적서는 제출되지 않아도 신고를 받아주고 있음.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서류 미비에도 신고증이 나가는 것인가? 이는 분명히, 법령 위반사항이 아닌가?

**질의3** 더욱이, 문화산업진흥법에 명시된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09년 2월6일 법 제2조 20항으로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09년 6월6일 이후 신고접수 된 서류를 보면 개정 전 법 조항이 명시된 양식에 작성되어 있음.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는 '09년 2월6일 개정.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음. 즉 '09년 5월6일 이후 부터는 새로운 신고접수 양식을 받아야 함에도 여전히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4호에 따라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혹은 변경신고를 한다고 되어있음.

심지어 '09년 9월14일 접수된 서류를 보면 1999년 5월에 승인된 서식에 작성되었는데도 문체부는 신고처리를 하였음. 법적인 효력이 없는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에도 문체부가 신고처리를 한 이유는?

**질의4** 문체부는 독립제작사에 대하여 일괄적인 점검 해 본적 있는가? 그리고 신고된 제작사 폐업현황은 파악하고 있는가?(폐업현황 파악하지 못함. 단지 신고증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

이렇게 무성의한 관리를 행하는 문화체육부는 신고·관리에 대하여 아무런 해명도 없이, '10년 58개 업체, 59억원의 예산을 지원함. 이 중에는 최근 MBC에서 방영한 '로드넘버원'이라는 드라마를 비롯하여 신고양식에 문제가 있는 19개 업체 21개 작품에 19억5,200만원 지원하는 등 법과 원칙에 어긋난 행동을 취하고 있음.

시행령에 명시된 독립제작사 신고조항을 위반하거나, 법과 시행령이 모두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신고서류를 받아 신고증을 내어주는 오류를 현재에도 범하는 등 독립제작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매우 허술함을 보여주고 있음. 지금이라도, 독립제작사에 대하여 일괄적인 점검해야 하지 않겠나?

**질의6** 방송영상독립제작사는 방송영상부분의 핵심임. 또한 이러한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기반으로 제2, 제3의 한류와 더불어 우리의 영상산업의 원동력이 나올 수 있는 것임. 따라서,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에 대하여 신고의 적법성부터 해결되어야 할 것임.